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업기획팀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농업연구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간척지농업연구팀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자재산업과·사업기획팀”을 “농자재산업과”로, “농촌지도관으로, 사업기획팀장 및”을 “농촌지도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13의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제7조제4항제5호 중 “연구사업”을 “연구사업 기획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5.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16.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별표 3 중 총계 “348”을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47”을 “346”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6”을 “44”로 하고, 농업주사보 8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공업서기보 “4”를 “5”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5 중 공업서기보 “4”를 “5”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9의2 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2년 10월 31일”을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2년 10월 14일”을 “2024년 10월 14일”로 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농자재육성팀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자재산업과장이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연구정책국에 <u>연구정책과 ·</u> <u>연구운영과 · 연구성과관리과 ·</u> <u>농자재산업과 · 사업기획팀</u>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 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u>농촌지도관</u> <u>으로, 사업기획팀장</u> 및 첨단농 자재육성팀장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 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 <u>연구정책과 ·</u> <u>연구운영과 · 연구성과관리과 ·</u> <u>농자재산업과</u> ----- ----- ----- ----- ----- <u>농촌지도관</u> <u>으로, -----</u> ----- ----- ----- ----- ----- -----.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u><신 설></u>	<u>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u> <u>사업 투자계획 수립</u>
<u><신 설></u>	<u>13의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u>

④ 연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삭 제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운영

6. ~ 13. (생 략)

14. 삭 제

<신 설>

<신 설>

⑤ ~ ⑦ (생 략)

⑧ 사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3.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4.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④ -----
-----.

2. · 3. (현행과 같음)

5. ----- 연구사업
기획 및 -----
--

6. ~ 13. (현행과 같음)

15.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16.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u>5.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u> ⑨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u>2022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u>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업기획팀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은 각각 2022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u>	⑨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5년 10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u>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농자재육성팀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u>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업기획팀장 및 첨단농자재육
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
이 지난 날부터 사업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
이 분장하고, 첨단농자재육성팀
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자재산
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 및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
연구사 1명)은 각각 2022년 10
월 14일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9호 농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농자재산업과장이 분
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2024년 10
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환원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식품위생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삭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증원된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48</u>	<u>347</u>	-1
	.		.	.	
	.		.	.	
일반직 계			<u>347</u>	<u>346</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6</u>	<u>44</u>	-2
	.		.	.	
	.		.	.	
<u>식품위생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서기보	· · <u>4</u>	· · <u>5</u>	+1
· · 기계운영서기보	· · <u>3</u>	· · <u>2</u>	-1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서기보	• • <u>4</u>	• • <u>5</u>	+1
• • 기계운영서기보	• • <u>3</u>	• • <u>2</u>	-1
•	•	•	